

# 沙溪里 綾城具氏家와 그 文書

高 昌 錫\*

## 目 次

- I. 머리말
- II. 教旨와 教牒
- III. 戶口單子
- IV. 所志·完文·上書·情由類
- V. 田畝文記
- VI. 맺음말

## I. 머리말

本稿는 沙溪里 綾城具氏 宗家에 所藏되어 있는 일련의 古文書를 一瞥해 보고자 한 것이다. 지금까지 보관되고 있는 古文書로는 戶口單子, 所志類, 完文, 田畝文記 등이 있었으며, 많은 분량은 아니나 여태까지 그들 조상들이 남긴 문서들을 잘 보존해 오고 있었다. 현재 제주도에는 이처럼 자신들 조상들과 관련된 古文書를 소장하고 있는 집안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 所藏의 意義는 크다고 하겠으며, 따라서 本稿에서 이를 다루게 된 動機도 여기에 있다. 다만 많은 분량이 아니어서 古文書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다각도로 살펴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어서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

綾城具氏家가 沙溪里에 거주하게 된 淵源은 具普萬의 濟州流配로부터 비롯된다. 大靜邑 上幕境 媿口田(지구왓) 具濟國의 墓所 앞에 세워져 있는 <義士通

\* 濟州大學校 史學科 敎授

德郎具濟國之碑文〉 내용 중에, 「揚武原宗功臣通訓大夫行鎮海縣監諱普萬卽公之考也, 適以邑事, 被謫入濟, 殆謫十年, 乃娶晉州姜公之女, 生公於乾隆丙戌七月二十六日, 而年才四歲, 蒙恩還洛, 濟之有具自公始焉」이라 하여, “鎮海縣監 具普萬이 고을 사건으로 제주에 流配되어 거의 10년을 귀양살이 했는데, 이 때에 晉州姜公의 딸을 맞아 들어 公(具濟國)을 낳았으며, (英祖 42년 1777, 丙戌) 公의 나이 겨우 네 살 때에 방면되어 서울로 돌아갔다.” 제주에 具氏家가 형성된 것은 公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하였다. 또 沙溪里 마라못 지경에 있는 〈入島祖具普萬之碑文(永世子孫追遠望墓碑)〉에는, 「公莅任鎮海時, 以邑事被謫, 謫下濟州大靜上今勿路里留焉」이라 하여, “具普萬이 유배된 것은 鎮海縣監으로 재직할 때이며,<sup>2)</sup> 그 謫居地는 大靜縣 上今勿路里(웃거문길)”라 하였다. 이상의 두 碑文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具普萬은 具濟國의 나이 4세 때에 유배생활에서 방면되었고, 또 제주에서 거의 10년 간을 謫居했다고 했으므로 그의 제주유배는 具濟國의 나이 4세가 되는 英祖 45년(1769)에서 약 10년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沙溪里 具氏家는 具濟國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이하 本稿에서는 戶口單子를 통한 그들의 家系變遷과 諸般文書에 나타난 그들의 生活環境 등을 살펴보는 순서로 論理를 전개해 볼까 한다.

## II. 教旨와 教牒

教旨는 국왕이 四品官 이상의 官吏에게 官職·官爵·資格·諡號·土地·奴婢 등을 내려주는 辭令狀이며, 教牒은 五品官 이하 官員의 임명시에 내리는

- 1) 그런데 「朝鮮王朝實錄」 英祖 49년(1773) 3월 癸巳條에는, 「上御集慶堂, 引見大臣備堂, 大司憲任希教等, 又啓曰, 具普萬縱子通逆種, 負犯難赦, (중략) 又請具普萬, 設鞫嚴問, 上從之」라 하여, 大司憲 任希教가 “具普萬은 아들이 逆賊의 種子와 婚姻을 하게 하였으니, 그의 犯罪는 용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推鞫廳을 설치하여 具普萬을 訊問할 것”을 요청하자 王이 이에 따랐다는 내용이 보이며, 正祖 元年(1777) 正月 庚辰條에는, 「放勿限年定配罪人具普萬」이라 하여, “연수를 한정하지 않고 정배한 죄인 구보만을 석방하였다”는 것을 보면, 제주유배 이후 아들의 혼인문제로 다시 유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배지는 미상이다.
- 2) 具普萬이 鎮海縣監으로 임명된 것은 本文의 教旨 내용 (E)를 參照할 것.

官職 任命狀이다. 『朝鮮王朝實錄』太祖 元年 10월 癸酉條에,

「改告身式. 一品至四品賜王旨曰官教. 五品至九品門下府奉教給牒曰教牒」

이라 한 바와 같이,太祖 원년 10월에 高麗朝 이래의 告身署經法을 개혁하여 1품에서 4품까지는 王旨를 내려서 官教라 하고, 5품에서 9품까지는 門下府에서 王명을 받들어 牒紙를 出給하는 형식으로 이를 教牒이라 하여, 告身の 형식에는 官教와 教牒 두 가지가 있었다. 告身이란 官職을 수여할 때에 내려주는 授官證書 즉 辭命書(任命狀)이다. 그런데 教旨의 경우,太宗 때까지는 王旨 또는 官教라 하다가 世宗朝에 이르러 비로소 教旨라 칭하게 되었으며,<sup>3)</sup> 『經國大典』禮典 用文字式에 의하면, 그 내용에 따라 4품관 이상의 文武官의 告身, 紅牌(文武科 及第者)와 白牌(生員과 進士)의 授與, 追贈, 鄉吏免役의 賜牌, 奴婢土田의 賜牌 등의 경우<sup>4)</sup>에 教旨를 내렸다. 특히 告身の 경우, 文武官 4품 이상은 臺諫(司憲府와 司諫院)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직접 왕의 教旨로 임명하였는데, 5품 이하의 臺諫의 署經을 거쳐 吏曹와 兵曹에서 王명을 받들어 발령하도록 되어 있었다. 즉 『經國大典』吏典 告身條에 의하면,

「凡受職者告身, 五品以下, 考司憲府司諫院署經, 給之<註, 考內外四祖及己身有痕咎與否署經>」

이라 하여, 5품 이하 관원의 임명이 있을 때에는 司憲府와 司諫院에서 本人과 內外 四祖 즉 父·祖父·曾祖父·外祖父에 대하여 瑕疵의 有無를 조사하여 吏曹나 兵曹에 回報하는데 이를 署經이라 하며, 이 署經에 통과되어야 비로소 辭命狀을 교부한다. 그리고 그 教牒의 주요 내용으로는 某曹가 某年某月某日에 王명을 받들어 아무개를 某階 某職에 除授한다는 것과 年紀表示, 教牒의 발급사유, 判書·參判·參議·正郎·佐郎의 署押 등이 있었다. 그리고 告身の 발급사유를 文官은 연호의 왼쪽에 쓰고 武官은 연호의 오른쪽에 쓰는 차이가 있었다.<sup>5)</sup> 여기서는 편의상 연대순으로 教牒을 먼저 提示한다.

3) 『朝鮮王朝實錄』世宗 17년 9월 辛未條.

4) 『經國大典』禮典 用文字式에는 각 教旨의 작성 양식이 제시되어 있다.

5) 崔承熙: 『韓國古文書研究』, 知識產業社, 1989, p. 96.

1) 教牒 (70×53.5cm)

吏曹雍正七年七月

二十二日奉

教通善郎具普萬爲

通德郎者

雍正七年七月 日

奮武原從三等功臣加

正郎

行判書 參判 參議臣吳(手決)

佐郎

위 教牒은 吏曹에서 王命을 받들어 通善郎 具普萬을 通德郎으로 임명하는 내용이다. 왕명을 받은 것은 雍正 7년, 즉 英祖 5년(1729) 7월 22일이며, 이에 의하여 吏曹에서 教牒을 발급한 것도 같은 해 7월이다. 그러나 날자는 未詳이다. 아마 왕명을 받은 날(22일)이거나 그 이후 7월 말까지의 어느 날이 될 것이다. 通善郎은 文散階(文官) 正五品 下階의 品階名이며, 通德郎은 正五品 上階의 品階名이므로 한 位階 昇級하고서 받은 教牒이라 할 수 있다. 通德郎으로 임명하는 사유는 「奮武原從三等功臣加」라 하여 '奮武原從三等功臣에 加資' 되었기 때문이었다. 奮武原從功臣은 英祖 4년(1728)에 일어난 李麟佐 등의 반란을 평정한 功으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내려졌던 勳號이며, 뒤에 揚武原從功臣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리고 당시 揚武錄勳都監<sup>6)</sup>에서는 原從功臣들의 이름을 총망라하여 錄券을 간행하고 이를 領議政 李光佐 등의 原從功臣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이 「揚武原從功臣錄券」이다(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위 教牒에는 年號 위의 한 군데에 官印(내용 未詳)이 捺印되어 있으며, 署押(手決)은 當上인 參議 1인만이 하고 있다.

2) 教旨

(A) 教旨 (74.5×52cm)

---

6) 錄勳都監은 功勳을 勳籍에 적는 일을 맡아 보는 임시 官衙이며 여기서 原從功臣의 功勳을 기록한 文書인 錄券을 간행하게 된다.

沙溪里 綾城具氏家와 그 文書

具普萬爲

宣略將軍

義興衛後

部將者

丁二別加

乾隆十二年五月 日

(B) 教旨 (74.5×54.5cm)

具普萬爲通訓

大夫行軍器寺

主簿者

乾隆十二年六月二十一日

(C) 教旨 (73.5×52cm)

具普萬爲

宣略將軍

行龍驤衛

副司果者

開城府哨官仕滿例授

乾隆十三年九月 日

(D) 教旨 (78×55.5cm)

具普萬爲

禦侮將軍

行龍驤衛

副司果者

乾隆十三年十一月 日

從事官錄受

(E) 教旨 (73.5×55.5cm)

具普萬爲通訓

大夫行鎮海縣

監者

乾隆二十一年三月十二日

(A)는 乾隆 12년, 즉 英祖 23년(1747, 丁卯) 5월에 具普萬을 '宣略將軍義興衛後部將'으로 임명하는 교지인데, 「丁二別加」라 한 것은 '丁卯年 2월에 특별히 加(資)' 되었다는 뜻이며, 이것이 바로 교지를 발급하는 사유가 되고 있다.

宣略將軍은 西班(武官) 從四品 下階의 散階名이며, 義興衛는 中央 五衛의 하나로 中衛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甲士와 補充隊가 소속된다. 또 이를 지역으로 구분하면, 中·左·右·前·後의 五部로 나누어지는데, 後部將은 곧 後部の 部將이란 뜻이다. 황해도의 黃州와 海州鎭管이 여기에 소속되었다. 兵制에 의하면, 5人을 1伍, 5伍를 1隊, 5隊를 1統, 5統을 1部, 5部를 1衛로 편성한다고 하였다. 部將은 西班 京官職(五衛)의 從6品職이다.

(B)는 같은 해 6월 21일에 具普萬을 '通訓大夫行軍器寺主簿'로 임명하는 교지이다. 「行軍器寺」의 '行'은 「資高而降差卑職者稱行」이라 하여, 補任된 官職(實職)이 그가 이미 받은 바 있는 품계에 相應하는 官職보다 낮은 職(卑職)인 경우를 말하며, 이를 '行職'이라고도 한다. 반대로 「資卑而降差高職者稱守」라 하여, 보임된 官職이 그가 이미 받은 바 있는 품계에 상응하는 官職보다 높은 품계의 實職 경우에는 이를 '守' 또는 '守職'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行職 또는 守職을 수여하는 법을 行守法<sup>7)</sup>이라고 한다. 이를테면 通訓大夫는 文散階 正三品 下階의 品官名(堂下官)인 데 비해 主簿는 從六品의 官職에 불과한 경우이다. 軍器寺는 軍器의 제작을 맡은 官衙이며, 主簿는 文書와 簿籍을 주관한다.

(C)는 乾隆 13년, 즉 英祖 24년(1748) 9월에 具普萬을 '宣略將軍行龍驤衛副司果'로 임명하는 교지인데, 龍驤衛도 義興衛와 마찬가지로 중앙 五衛(左衛)의 하나이며, 別侍衛와 隊卒이 이에 소속된다. 그리고 副司果는 五衛에 속하는 從六品 武官職이었다. 교지의 발급사유는 「開城府哨官仕滿例授」라 하여 開城府 哨官職에서 임기가 만료되어 定例대로 除授한다는 것이다. 哨官은 각 軍營의 1哨(약 100명)를 거느리는 尉官職이다.

(D)는 같은 해 11월에 具普萬을 '禦侮將軍行龍驤衛副司果'로 임명하는 교지인데, 여기서는 宣略將軍에서 西班의 正三品 堂下官의 散階인 禦侮將軍으로 승급되고 있으며, 그 사유는 「從事官錄受」라 하여 從事官(從六品)에 錄受되었기 때문이었다. (E)는 乾隆 21년, 즉 英祖 32년(1756) 3월 12일에 具普萬을

7) 官職 임명법의 하나로, 政府組織 法規인 吏典이나 兵曹의 官職에는 所定品階 소지자를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예외적으로 特定 品階者를 품계에 해당하는 官職보다 下位職에 임명할 때는 行, 上位職에 임명할 때는 守를 임명직위에 붙여 이를 구별하였다.

'通訓大夫行鎮海縣監'으로 임명하는 교지이다.<sup>8)</sup> 이로써 보면 具普萬은 文武官職을 두루 오갔음을 알 수 있다.

3) 揚武原從功臣錄券(21.5×32.5cm)

이 錄券은 雍正 6년, 즉 英祖 4년(1728) 7월에 揚武錄勳都監에서 閑良 具普萬에게 내렸던 揚武原從功臣으로서의 證書이다. 錄券의 發給에는 「爲等如施行爲只爲下吏曹爲良如教」(모두 시행하도록 吏曹에 내려)란 文句가 말해 주듯이 吏曹의 官員들이 참여하였고 또 「吏曹之印」(10×10cm)을 捺印하고 있다. 이 錄券은 木活字로 印出한 것이 특징인데, 이는 그 수가 수천 명에 달해서 오히려 印出하는 것이 편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政府에서 내린 證書이지만 책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戊申亂(李麟佐의 亂)이 진압된 후인 英祖 4년 7월에 王命을 받들어 揚武錄勳都監에서 發行하여 原從功臣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다. 양무원종공신은 그 등급이 3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수가 무려 4천 여명에 이르고 있다. 收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머리에는 「揚武討逆頒教文」(4張 8面)이 실려 있다. 이는 大提學 尹淳이 製進한 것으로 원종공신에 대한 錄勳의 의의를 밝힌 것이다. 즉 여기에는 반란의 발생과 경과, 토벌, 처벌 과정에 관한 概略과 大赦令을 내린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뒤에는 「揚武原從功臣錄券」(78張 156面)이라는 문서의 명칭을 적고, 줄을 달리하여 「閑良 具普萬」이라 하여 受給者의 身分과 이름을 기재하고

8) 具氏宗家에 소장된 乾隆 60년(正祖 19, 1795) 乙卯式의 戶口單子에는,  
乾隆六十年乙卯五月 日戶口單子

第二中面今勿路里

第十一統五戶忠翊衛具濟得改名濟國 年三十丙戌 本綾州

父揚武原從三等功臣通訓大夫行鎮海縣監金海鎮管兵馬節制都尉 普萬

祖成均進士 貞臨

曾祖贈通政大夫承政院同副承旨兼經筵參贊官 興建

外祖學生 姜相文 本晉州

除

戶首 具濟國

行縣監(押)

이라 하여, 具普萬은 鎮海縣監을 지낸 이후 金海鎮管兵馬節制都尉를 歷任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있다. 즉 이 녹권은 閑良 具普萬에게 내린 것이라는 점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에 「吏曹之印」이 날인되어 있다(전체의 명단에서는 73張 右面に 그 이름이 보인다.).

다음으로 양무원중공신을 封하라는 傳旨가 있다. 이 傳旨는 雍正 6년, 즉 英祖 4년 7월 15일에 同副承旨 洪景輔가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녹권의 本文이다. 즉 그 내용은 먼저 원중공신을 錄勳하라는 임금의 傳旨를 받고, 그 뒤를 이어 領議政 李光佐 이하 양무원중공신 1등의 명단, 判義 禁 沈檀 이하 양무원중공신 2등의 명단, 參議 吳命新 이하 양무원중공신 3등의 명단 등을 그 관직이나 신분과 함께 수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명단이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위로는 領議政으로부터 羅將, 僧侶, 宮奴 등 각계각층의 인물들이 매우 다양하게 올라 있다.

末尾에는 같은 날인 7월 15일 左承旨 李仁復이 받은 傳旨가 수록되고, 이어 각 등급에 따른 공신의 特典을 명기하고 있다. 그 내용은 공신 본인에 대한 加資一級과 부모의 封爵, 子孫의 承蔭(蔭職 진출)에 대한 대우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다음으로 物故人(사망자)의 追贈,<sup>9)</sup> 犯罪作散人<sup>10)</sup>의 本品敍用, 喪中이거나 無故作散人<sup>11)</sup>의 加資敍用, 永不敍用<sup>12)</sup>人의 仕路開通, 職牒還收<sup>13)</sup>人의

9) 追贈은 朝鮮 시대에 官職 2품 이상의 宗親, 文武官의 父·祖·曾祖 3대에게 死後에 그 자손의 관직이 높고 낮음에 따라 관직을 追敍하는 것을 말한다. 즉 2품 이상의 3대 중에 살아 있으면 封爵을, 죽었으면 贈職을 주게 되어 있었다. 이는 나라에 功勞가 있고 學行과 德望이 있는 사람을 예우하고 그 영예를 길이 빛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經國大典』 禮典 用文字式 追贈條에는 “어느 官 누구의 故 누구에게 어떤 職을 追贈한다”는 文言과 年月日, 玉璽 등을 기재, 날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0) 犯罪로 인하여 散職이 된 자로 일정한 직무가 없고 다만 官員 身分만을 갖는다.

11) 이유없이 散官이 된 자.

12) 永不敍用은 仕版에서 이름을 삭제하여 영원히 관직에 敍用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官員이 罪科를 범한 경우, 그 罪科의 정상에 따라 처분하는 형벌의 일종으로 단순히 職牒을 거두는 免職보다 훨씬 무거운 責罰이다.

13) 벼슬아치가 범죄로 인하여 職牒을 剝奪(還收)당한 것을 말한다.



沙溪里 續城具氏家와 그 文書

還給, 妾子の 限品<sup>14)</sup>安徐, 公私賤口의 免賤,<sup>15)</sup> 逆黨과의 관련자 등에 대한 赦免과 그 制限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끝에는 揚武錄勳都監(1張 1面)의 堂上 吳命恒·趙文命, 郎廳 成德淵, 監校 沈減, 監造 黃星河 등의 이름이 있다.

4) 傳令

(A) 傳令 前執事具濟國

涯月鎮助防將

差定不輕察任

者

甲子正月二十一日

使(押) (78×41cm)

(B) 傳令 前助防將具濟國

涯月鎮助防將差

定不輕察任者

乙丑三月 日

使(押) (55.5×60cm)

(C) 傳令 前執事具念祖

西歸鎮助防將

差定不輕察任

者

甲申四月 日

使(押) (58×50.5cm)

(D) 傳令 前助防將具念祖

待變行首差

定不輕隨行

者

---

14) 限品(綾用)은 官員의 良賤妾의 子孫 中 庶孽에 대하여 그들을 任用할 때에 父祖의 品階에 따라 所定의 品階에까지 制限하여 그 이상의 品階에는 任用하지 못하도록 규제된 것을 뜻한다. 즉 身分에 따라 品階를 制限하여 일정 범위의 官職에 한하여 任用하는 것을 말한다. 安徐는 잠시 保留하는 것을 말한다. 李泰鎮; 「庶孽差待考」, 『歷史學報』 27, 1965.

15) 賤人의 신분을 免하여 良人이 되는 것을 말한다.

辛亥四月 日  
官(押) (54.4×45cm)

(A)는 갑자년, 즉 純祖 4년(1804) 정월 21일에 牧使가 前執事 具濟國을 涯月嶺 助防將<sup>16)</sup>으로 差定(임명)한다는 내용인데, (B)에서 보면 다시 그에게 그 다음 해 3월에 애월진 조방장을 차정하고 있다. 재임명(留任)이라 할 수 있다. (C)는 갑신년, 즉 純祖 24년(1824) 4월에 牧使가 前執事 具念祖를 西歸嶺 助防將으로 차정한다는 내용이며, (D)는 신해년, 즉 哲宗 2년(1851) 4월에 官에서 同人을 待變廳 行首로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待變廳은 海洋의 遭難을 應急하기 위해 설치했던 관청이며, 여기에는 行首職(1인)이 있었다.<sup>17)</sup>

### Ⅲ. 戶口單子

戶口單子是 乾隆 57년(正祖 16, 1792) 壬子式으로부터 光緒 8년(高宗 19, 1882) 壬午式까지의 90년 동안(光緒 5년(高宗 16, 1879)의 己卯式 單子만 缺本되었다.) 의 것으로 현재 30장이 所藏되고 있다. 이를 表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年 號, 年 代	式年	住 所	戶 首	統戶	家 率	備 考
乾隆57, 正祖16, 1792	壬子	第2中面今勿路里	具濟得	14/5	2(남 1, 여 1)	改名
60, 19, 1795	乙卯		具濟國	11/5	1(남 1)	
嘉慶 3, 22, 1798	戊午		不記	1(남 1)		
6, 純祖 1, 1801	辛酉	第2右面第6今勿路里		11/5	2(남 2)	
9, 4, 1804	甲子			11/4	5(남 2, 여 3)	
12, 7, 1807	丁卯			10/4		
15, 10, 1810	庚午			10/3		
18, 13, 1813	癸酉			8/2	8(남 4, 여 4)	
21, 16, 1816	丙子	第2中面第6今勿路里		15/3		
24, 19, 1819	己卯				9(남 4, 여 5)	
道光 2, 22, 1822	壬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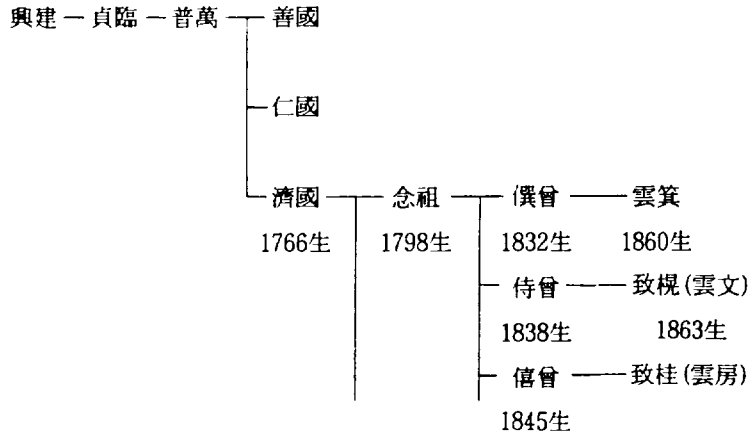
16) 助防將은 당시 濟州 9嶺 중 明月嶺을 제외한 8개 嶺에 설치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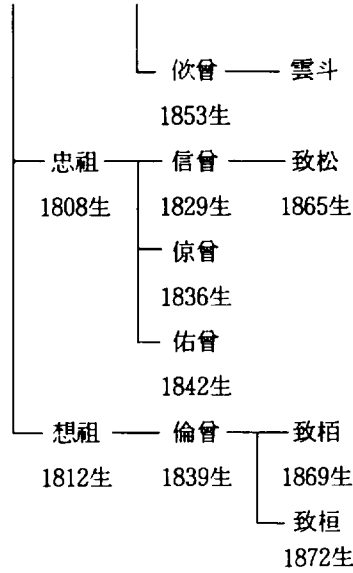
17) 『耽羅防營摠覽』 待變廳條 參照.

沙溪里 綾城具氏家와 그 文書

5.	25, 1825	乙酉						
8.	28, 1828	戊子					9(남 3, 여 6)	
11.	31, 1831	辛卯				15/1	不 記	借入3
14.	34, 1834	甲午	第2中面今勿路里	具念祖	14/1		18(남 7, 여 11)	外戚4
17.	憲宗 3, 1837	丁酉					16(남 7, 여 9)	借入1
20.	6, 1840	庚子	第2中面沙溪里				20(남 9, 여 11)	
23.	9, 1843	癸卯	第2右面沙溪里				26(남14, 여12)	借入5
26.	12, 1846	丙午				탈락	탈 락	雇工4
29.	15, 1849	己酉				11/1	19(남10, 여 9)	雇工2
咸豐 2.	哲宗 3, 1852	壬子					18(남11, 여 7)	
5.	6, 1855	乙卯					19(남11, 여 8)	
8.	9, 1858	戊午					16(남11, 여 5)	
11.	12, 1861	辛酉					18(남12, 여 6)	
同治 3.	高宗 1, 1864	甲子				11/2	19(남12, 여7)	
6.	4, 1867	丁卯					23(남13, 여10)	
9.	7, 1870	庚午					26(남12, 여14)	
12.	10, 1873	癸酉					26(남13, 여13)	
光緒 2.	13, 1876	丙子					不 記	
(缺 本)								
光緒 8.	19, 1882	壬午	第2右面沙溪里	具僎曾	11/2		不 記	

다음으로 戶口單子를 통해서 그 家系와 가족의 이동 상황을 연대순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戶首 具濟國

- 1792年(正祖 16, 壬子)의 戶口單子에는 具濟得<sup>18)</sup>으로 되어 있으나 1795년(正祖 19, 乙卯)의 호구단자에서는 具濟國으로 改名됨.
- 1801년(純祖 1, 辛酉) 長子 念祖(6세, 丙辰生)가 本里 任弼昌의 戶에서 入籍됨.

18) 具氏宗家에 소장된 婚姻文記에는,

時維孟春  
 尊體百福僕之庶弟濟得年既長成  
 未有伉麗伏蒙  
 尊慈不鄙寒微許以  
 令愛脫室茲有先人之禮敬遣使者  
 謹行納幣伏惟  
 鑑察不宜謹狀

丙午二月二十七 綾城後人具仁國再拜

라 하여, 濟得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濟國으로 개명한 것은 兄 仁國의 國字 行례에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한다. 丙午年은 正祖 10년(1786)에 해당된다.

### 沙溪里 綾城具氏家와 그 文書

- 1804년(純祖 4, 甲子) 妻(任召史 38세, 丁亥生)와 長女(14세, 辛亥生)가 本里 任弼昌의 戶에서 入籍됨.
- 1813년(純祖 13, 癸酉) 子婦 洪氏(24세, 庚戌生)가 和順里 洪繼宗의 戶에서 入籍되고, 長女(23세)가 桃源里 林庚仁의 戶로 出嫁함.
- 1822년(純祖 22, 壬午) 次女(21세, 壬戌生)가 桃源里 林景七의 戶로 출가함.
- 1825년(純祖 25, 乙酉) 3女(20세, 丙寅生)가 自丹里 宋守連의 戶로 출가함.
- 1828년(純祖 28, 戊子) 次子 忠祖(26세, 癸亥生)와 妻 林氏(28세, 辛酉生)가 分戶하고, 子妾 姜氏(26세, 癸亥生)가 下幕瑟里 姜成發의 戶에서 入籍됨.
- 1829년(純祖 29, 己丑) 孫子 信曾이 태어남.

### 2) 戶首 具念祖

- 1831년(純祖 31, 辛卯) 9월 1일에 通德郎 具濟國(66세)이 사망하고, 子 念祖가 戶首를 계승함.
- 1832년(純祖 32, 壬辰)에 長子 似曾이 태어남. 이 무렵부터 일가족에게 功臣의 孫이라 하여 雜役이 면제됨.
- 1835년(憲宗 1, 乙未)에 4女가 태어남.
- 1836년(憲宗 2, 丙申) 侄子 倞曾(忠祖의 次子)이 태어남.
- 1837년(憲宗 3, 丁酉)에 3女(25세, 癸酉生))가 下靑里 丁汝浩의 戶로 출가함. 이 해에 妻 洪氏(48세)와 率妾 姜氏(35세)가 7월 11일과 4월 18일에 각각 사망함.
- 1838년(憲宗 4, 戊戌)에 次子 侍曾이 태어나고, 다음해 1839년에 侄子 侍曾(想祖의 子)이 태어남.
- 1840년(憲宗 6, 庚子) 弟(想祖) 妻 高氏(37세)가 上幕里 高濟彦(親庭)의 집에서 入籍됨. 또 率妾 姜氏(28세, 癸酉生)가 하모리 吳承祿의 戶에서 入籍됨.
- 1842년(憲宗 8, 壬寅) 姪子 佑曾(忠祖의 3子)이 태어남.
- 1843년(憲宗 9, 癸卯) 家率이 일가족 19명(男 9, 女 10)과 借入(5), 内外從 侄女(2) 합쳐 26명으로 불어남.

耽羅文化 14號

- 1845년(憲宗 11, 乙巳) 3子 信曾이 태어나고, 다음해에 4女(18세)가 和順里 徐順祿의 戶로 출가함. 子婦 鄭氏(似曾의 妻)가 大浦里 鄭寬好의 好에서 입적됨.
- 1848년(憲宗 14, 戊申) 9월 4일에 母 任氏(82세)가 사망함.
- 1849년(憲宗 15, 己酉) 2월 11일에 子婦 鄭氏(27세)가 사망함.
- 1852년(哲宗 3, 壬子)에 子婦 金氏(21세, 似曾의 妻)가 東城里 金字聲의 戶에서, 侄婦 金氏(21세, 壬辰生)가 通泉里 金繼宗의 戶에서 입적됨. 次女(33세, 庚辰生)와 侄女(27세, 丙戌生)가 下靑里 成仁集과 成元集의 戶로 각각 출가하고, 5女(18세, 乙未生)는 廣清里 林茂春의 戶로 출가함. 이 해 7월 11일에 涼曾(20세, 忠祖의 次子)이 사망함.
- 1853년(哲宗 4, 癸丑)에 4子 依曾이 태어남.
- 1855년(哲宗 6, 乙卯)에 子婦 玄氏(25세, 侍曾의 妻)가 日果里 玄範勳의 戶에서 입적됨. 이 해 7월 11일에 弟(想祖)妻 高氏(52세)가 사망함.
- 1858년(哲宗 9, 戊午) 姪女(21세)와 姪女(27세, 壬辰生)가 각각 本里 李繼承의 戶와 上幕里 鄭台勛의 戶로 출가함.
- 1860년(哲宗 11, 庚申) 孫子 龍彩가 태어남(似曾의 子).
- 1861년(哲宗 12, 辛酉) 姪婦(侍曾의 妻, 이때에 倫曾으로 改名 23세, 己亥生) 林氏(27세, 甲午生)가 武陵里 林東佖의 戶에서 입적됨.
- 1863년(哲宗 14, 癸亥) 孫子 致槻(侍曾의 子)이 태어남.
- 1864년(高宗 1, 甲子) 子 似曾이 僕曾으로, 孫子 龍彩가 致榮으로 각각 改名함. 子婦 金氏(33세, 壬辰生 信曾의 妻)가 下幕瑟里 李東植의 戶에서 입적됨.
- 1865년(高宗 2, 乙丑) 從孫子 致松(信曾의 子)이 태어남. 子婦 金氏(25세, 癸卯生, 依曾의 妻)가 上幕里 金宗三의 戶에서 입적됨.
- 1867년(高宗 4, 丁卯) 姪子婦(29세, 己亥生 佑曾의 妻)가 州 造水里 張鳳秀의 戶에서 입적됨.
- 1868년(高宗 6, 戊辰) 11월 24일과 11월 10일에 率弟 信曾(45세)과 姪婦 金氏(37세)가 각각 사망함.
- 1869년(高宗 6, 己巳) 從孫子 致伯(뒤에 致佰, 倫曾의 長子)이 태어남. 이

沙溪里 綾城具氏家와 그 文書

해 2월 28일에 率弟 忠祖가 사망함(67세).

- 1870년(高宗 7, 庚午) 4월 27일에 弟妻 林氏(信曾의 母)가 사망함.
- 1871년(高宗 8, 辛未) 2월 10일과 2월 15일에 從孫子 致松(9세)이 사망함.
- 1872년(高宗 9, 壬申) 從孫子 致杲(뒤에 致桓으로 改名, 倫增의 次子)가 태어남.

3) 戶首 具僕曾

- 1876년(高宗 10, 癸酉) 父 具念祖의 사망으로 戶首를 계승함. 母 姜氏(64세, 癸酉生)와 弟 僖曾 夫婦, 弟 依曾 夫婦 및 姪女(8세)가 分戶해 감. 子 婦 姜氏(22세 乙卯生, 致榮의 妻)와 姪子婦(26세 申亥生, 致楓의 妻)가 각각 本里 姜榮煥과 姜信烈의 戶에서 입적되고, 率女(19세, 戊午生)가 東城里 金致珠의 戶로 출가함.
- 1882년(高宗 19, 壬午) 子 致榮이 雲箕로 改名함. 弟 侍曾 夫婦와 姪子 夫婦 및 姪女 2명(18세와 15세)이 本里에서 分戶해 가고, 從弟 倫曾 夫婦와 姪子 致栢(14세, 己巳生) 致桓(11세, 壬申生)이 武陵里로 分戶해 감.

다음은 戶口單子의 一例다.

道光十四年正月 日甲午式戶口單子

第二中面今勿路里

第十四統五戶通德郎具濟國故代子忠義衛復戶 念祖年三十九丙辰 本綾州

父通德郎 濟國

祖揚武原從功臣通訓大夫行嶺海縣監 普萬

曾祖成均進士 貞臨

外祖業武任再發本豐川

母任氏年六十八丁亥

妻洪氏年四十六己酉籍南陽

父學生 龍河

祖業武 仁範

曾祖學生 世江

外祖業武姜大顯本晉州

率女氏年十八丁丑

男七

十八口內

次女年十五庚辰 女十一  
 次女年六己丑  
 生子似曾年三壬辰  
 率妾姜召史年三十二癸亥父 成發  
 率弟閑良 忠祖年三十二癸亥  
 率弟妻林氏年三十四辛酉父閑良 庚彩  
 率侄女年九丙戌  
 侄子信曾年六己丑  
 生侄女年三壬辰  
 率弟閑良想祖年二十三壬申  
 外戚假率張浩昌年三十五庚申父通德郎 鳳顯  
 外戚妻姜召史年三十五庚申父書員 奉周  
 外戚假率張成旭年十一甲申  
 生外戚女十二癸巳

以功臣孫依營題頓役丁

戶首 具念祖

行縣監(押)

後父通德郎具濟國年六十六辛卯九月初一日故

### IV. 所志·完文·上書·情由類

#### 1) 所志

朝鮮時代に 일반 백성이 官에 제출한 訴狀이나 請願書로 所志·白活(발괄)·單子·原情·上書·議送 등이 있는데 용어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그 형식은 매우 유사하였다. 다만 等狀은 여러 명이 連名으로 올리는 경우에, 그리고 議送은 觀察使에 청원하는 경우에 작성하였다.

大靜今勿路里居具濟國

右謹陳所志事段, 矣身以官喪護送營官出陸時, 鋤安島居朴喆根處, 雜物種與授後, 其矣年前入島時, 騎馬一匹買置別刀居任淑處, 持去不得矣, 上項喆根, 以同馬匹果爲放賣, 卽爲出給矣身處之成手表以送, 故矣身入浦後, 卽爲傳授是乎則, 所謂任淑, 稱以穀物喂養, 則喂養價傳折後, 馬匹持去云云, 島中之養牛馬, 夏秋結塗於草場, 冬春放去壑谷, 果不費穀物分叱除良, 所謂任淑借騎



沙溪里 綾城具氏家와 그 文書

喆根之馬，爲三年之久，則獨無其價亦爲堪當是乎乙去乙，隔海買馬，今爲空失之勢乙仍干，茲敢仰訴爲白去乎，伏乙，參商教是後，同任淑身乙，捉入法庭，嚴以查覈懲治後，元馬乙推給事，千萬望良只爲，行下向教是事。

使道 處分

甲子七月 日

(題音：判決) 果是幾禾之馬是鉢，如或兒馬則難以騎乘是鉢，結或放牧亦有看牧之勞，以此意通報朴哥處，不意以馬價之變，推願價未爲不可向事。

二十七日。

官(押) (34×41cm)

위 所志는 大靜 今勿路里에 사는 具濟國이 甲子年, 즉 純祖 4년(1804) 7월에 使道에게 올린 것이다. 내용은 “이 몸이 官喪으로 營官을 호송하여 출륙할 때에, 鋤安島(지금의 所安島)에 사는 朴喆根에게 雜物種을 授與한 후, 그가 年前 立島했을 때에 騎馬 한 필을 別刀에 사는 任淑에게 사두고 가져가지 못하였는데, 위의 朴喆根이 同 馬匹을 (本人에게) 放賣하고 즉시 이 몸에게 내주라고 手表를 작성하여 보내므로, 이 몸이 (別刀)浦에 들어온 후 전해 주었더니, 이른바 任淑이 穀物로 飼養했다고 하면서 飼養한 값을 換算해 준 뒤에 마필을 가져가라고 하였습니다. 島中에서 牛馬를 사양할 때에 여름과 가을에는 줄로 풀밭에 매어 먹이고 겨울과 봄에는 산골짜기에 풀어 놓으므로, 穀物을 소비하지 않을 뿐더러 이른바 任淑이 빌려 탄 喆根의 말은 3년이나 되었는데, 유독 그 값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옵거늘, 바다를 격하여 산 말이 지금 헛되어 喪失할 형세가 되었기에 이에 仰訴하옵니다. 엎드려 아뢰옵건대, 참작하신 후 同 任淑을 法廷에 잡아 들여 엄히 查覈하여 懲治한 뒤에 元馬를 찾아 줄 것을 千萬 바라므로, 처분하옵실 일”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접수한 使道는 동월 27일에 이에 대한 題音을 내리고 있는데, 그 내용은 “몇살배기 말이며 혹 兒馬라면 타기가 어렵다. 풀밭에 매어서 혹 放牧했어도 역시 看牧한 勞苦가 있으므로, 이런 뜻으로 朴哥에게 통보하고 뜻밖의 말값의 변동으로 원하는 값을 요구해도 옳지 않다고 할 것이 없음”이라고 하고 있다.

2) 完文

관청이나 단체에서 개인 혹은 단체에 부과된 身役, 雜役 및 税金 등을 면제 하고서 이를 證憑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이다. 完文에는 年號를 쓰지 않고 干支를 사용하는 것이 常例이다.

完文 (53×44cm)

右完文爲成給事, 本縣中面今勿路里村人呈營狀辭內, 本縣居忠翊衛具濟國幼學梁渭慶, 因壬申西變之事件, 會少年武士十餘人, 將爲挺身赴亂之筆, 而累訴營門, 終未得許題, 未免欽泣而歸, 事雖無效, 其志可尚, 請別般褒獎, 以勸來後亦爲了了的只, 本縣詳查以報教是乎所, 自本縣更爲查實, 具由論報矣, 本島邈在海外, 遠隔王化, 其民蠢蠢, 無實魚鱉, 而草茅之中, 有此忠身殉國之人, 豈非列聖朝愛恤島村四百年培養之功乎, 其在激勸之道, 不可不蔭及子孫, 願赴國難人具濟國長子長孫, 勿定賤役, 烟戶雜役永爲蠲嶼之意, 成給完文者.

丁丑正月 日

官(押)

이 完文은 純祖 17년(1817, 丁丑) 정월에 今勿路里 백성들이 올린 訴狀에 근거하여 濟州牧에서 具濟國·梁渭慶 두 집안에 身役과 雜役 등을 면제하고 이를 證憑하기 위해 발급한 문서다. 7곳에 朱印(7×7cm)이 捺印되어 있다.

내용은 “本縣 中面 今勿路里 마을 사람들이 營에 올린 狀辭 내용에, ‘本縣에 사는 忠翊衛 具濟國, 幼學 梁渭慶은 壬申年 西變<sup>19)</sup>이 일어났을 때에 少年 武士 10여인을 모우고 장차 자진하여 國難에 나아가려고 누차 營門에 호소하였으나 끝내 許題<sup>20)</sup>를 얻지 못하여 눈물을 머금고 돌아온 일은 비록 보람은 없으나 그 뜻이 가상하니, 특별히 褒獎하여 來後를 권하라’고 請願하였음이 확실하므로 本縣이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였던 바, 本縣에서 다시 사실을 조사하고 연유를 갖추어 論報하되, 本島는 멀리 海外에 있어 王化가 미치지 못하고 그 백성이 어리석어 실로 변변한 사람이 없으나 草野에 이와 같이 충성을 다하여 나라에 몸을 바치려는 사람이 있었으니, 어찌 列聖朝께서 섬마을을

19) 洪景來의 亂을 말한다.

20) 백성이 官廳에 제출한 請願, 陳情 따위의 民願書類의 餘白에 당해 관청이 指 命文을 써서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지령문을 題辭 혹은 題音이라 한다.

애홀하여 4백년 동안 培養한 功이 아니겠는가. 그 激勸하는 방도에 있어 庇蔭이 子弟에 미치지 않을 수 없으므로 國難에 나아가고자 한 具濟國의 長子長孫에게 賤役을 배정하지 말도록 청원하였으니, 烟戶雜役<sup>21)</sup>을 영원히 면제하는 뜻으로 完文을 작성하여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耽羅紀年』에는 「復義士梁渭慶具濟國家」라 하여, 같은 해에 두 집안이 復戶<sup>22)</sup>된 것으로 되어 있다.

### 3) 上書

上書는 所志의 일종으로, 等狀과 같이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巡相(觀察使)나 城主(守令), 繡衣使道(暗行御史) 등에게 올리는 文書이다. 내용은 山訟과 孝行, 卓行의 旌閭를 위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本稿의 上書는 둘 다 旌閭를 위한 것이다.

(A) 大靜儒生李漢復等惶恐仰達于

繡衣閣下, 伏以, 本島僻在海隅, 風俗之質質, 人物之蠢蠢, 不言可想, 而至於義理之方, 孝烈之心, 尤爲極難, 而故具濟國素是仕宦家後裔, 淪落茲鄉, 行義凡節, 出於凡類, 而往在壬申西賊之變, 中外人心, 洶湧失操, 而惟獨此人, 聞此變奇, 忿激義膽, 與其子念祖及鄉族梁渭慶, 謀聚武士數十餘, 同心協力, 期於赴難之意, 傳檄三邑呈縣呈營, 楫未成誓, 賊已就擒, 海瀾途遠, 事雖未濟, 凜凜義氣, 令人欽歎, 其後民狀儒疏, 疊呈聯起, 復其烟役成出完文, 錄名孝烈, 序其實蹟, 其有褒揚之典, 雖日無缺, 以若僻鄉超凡之節, 未得啓達立旌之表, 故敢茲仰籲, 曲諒細察焉, 千萬伏祝.

繡衣使道主 處分

己未十二月 日

御史(押) (39×65.5cm)

(題首) 亘古奇節, 偶庸嘉尚, 成完文蠲烟役, 此所以激勸也, 蒙掉楔之典, 事係慎重, 當商量事.

二十五日.

21) 民家에 대하여 부과하던 여러 가지 賦役을 가리킨다.

22) 復은 면제한다는 뜻이고 戶는 戶役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復戶는 徭役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有井智德 ; 「李朝における復戶制の研究」, 『史叢』 80-81, 1962.

위 文書는 己未年, 즉 哲宗 10년(1859) 12월에 大靜 儒生 李漢復 등이 繡衣使道(陪行御史)에게 올린 上書로서, 그 내용은 이러하다.

“本島는 궁벽한 바다 모퉁에 위치하여 풍속이 質實하고 인물이 蠢蠢함은 달이 없어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義理의 방도와 孝烈의 마음에 이르러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故 具濟國은 본래 仕宦家의 後裔로 이 고을에 머물러 살았는데, 義를 행하는 凡節이 凡類에서 出衆하여 지난 壬申年(純祖 12, 1812) 西賊之變<sup>23)</sup>에 있어서는 나라 안팎의 인심이 흉흉하여 절조를 잃었으나 유독 이 사람은 이 변란의 기별을 듣고 분격하여 정의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 아들 念祖 및 鄒族 梁渭慶과 더불어 武士 수십 인을 모우고 同心協力하여 기어히 國難에 나아갈 생각으로 檄文<sup>24)</sup>을 3邑에 전

23) 洪景來의 亂.

24) 장황하지만 당시의 檄文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檄書濟州大靜旌義三邑各里 兪賢前

右文爲馳檄事, 人生斯世, 所重者君親, 所貴者忠孝, 則父子之親, 君臣之義, 窮天地而不泯, 亘萬世而何沒, 先儒有言, 君親雖曰不同, 忠孝則本無二致, 以此觀之, 爲人臣子者, 不可喻生於君親之急難也, 若或子而不救父之危, 臣而不急君之難, 則非但得罪於忠孝之門閭, 亦將同歸於馬牛之襟裾, 可不戒哉, 今我聖上, 應謳譟承大統, 以堯舜之質, 駕湯武之德, 臨御以來, 光被四隅, 澤洽萬姓, 環八域生靈, 莫不欲須臾母死而思報德化之盛矣, 千萬料表, 兇逆之徒, 嘯聚徒黨, 聞發於義定之間, 蠢愚無識之民, 不辨順逆之如何, 往往投入, 萃爲賊藪云, 噫噫痛矣, 是何等變怪也, 累千載箕子之國, 四百年列聖之朝, 禮義文物小無愧於中華遺風, 善政實有傳於萬世, 眞所謂天府之土, 磐石之宗也, 而今此賊醜暗壞逆天之謀, 敢肆無君之惡, 則豈獨爲朝廷將相之力, 奮起討滅也, 實是舉國臣民, 不共戴天之讎也, 我東國三百六十四縣之中, 慷慨忠義之士, 必有奮發於草萊蓬蒿之間, 倡義殉忠, 以赴國家之急, 則此賊不足爲平, 而本島之民異於內陸, 實有千古難忘之德也, 特以絕海之氓, 眷眷於宵旰, 泯之憂船粟, 而哺飢民島科, 而榮寒儒使此萬里近如階間之餘頃, 當甲乙之凶, 歲民將盡劉, 而特蒙生王朝賑救之德, 父母妻子得保, 今日之命莫非聖恩牧賜也, 草木禽獸猶知天地雨露之澤, 則又况最靈之民, 豈無感恩之心哉, 今當君父危難之際, 正是臣子竭忠效死之秋也, 嗟嗟上下之人, 以先王涵育之民, 推曠昔濟活之恩, 齊赴國難直衝敵陣, 盍以死報之於主上殿下耶, 昔秦穆公時, 岐下野人, 共食公馬在法當誅, 而感恩於穆公之賜酒, 馳昌晉君, 推鋒爭死以報其德, 則豈非萬古之流芳乎, 以食馬野人之徒, 猶尚如此, 本島上下之人, 偏蒙國家之恩, 獨不及於岐下野人之徒乎, 若吾等以白面書生, 丹奮激衷, 決議殉國, 茲以發文于三邑各里, 上下忠義之士, 苟有忘身殉節之人, 則當與偕行誓不生還, 勿以我言爲迂, 逗遛觀望, 進退愁趨, 以赴君親也, 事非假外, 而實山丹衷, 到檄處處, 凡有血氣男

하고 營과 縣에 올라서 國難에 나아가 敵을 평정하려고<sup>25)</sup> 하였으나 賊이 이미 붙잡혔다는 말을 듣고 바다는 넓고 길은 멀어 일이 비록 성취되지는 못했으나 능능한 의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欽歎케 하였습니다. 그 후 民狀儒疏가 疊呈聯起하니, 그 烟役<sup>26)</sup>을 면제하도록 完文<sup>27)</sup>을 작성하여 出給하였고 孝烈錄<sup>28)</sup>에 이름을 기록하여 그 實蹟을 敘述하였으니, 그 褒揚의 恩典에 있어서 비록 흠이 없다고 하지마는 궁벽한 고을의 超凡한 절개와 같음은 旌門을 세워 表彰하도록 啓達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에 감히 양유하오니, 간곡히 헤아리고 자세히 살피시도록 천만 축원하옵니다.”

즉 이 上書는 褒揚의 恩典을 내려 賦役을 면제하고 그 실적을 孝烈錄에까지 올렸으나 이것으로 그치지 말고 旌閭의 은전을 내려 旌門을 세우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同月 25일 이를 접수한 暗行御史(沈東臣)는 ‘御史’라 揮筆하고 押(手決)하였으며, “萬古에 걸쳐 뛰어난 절개는 더욱 가상하다. 完文을 작성하여 烟役을 면제하였으니, 이는 激勸하는 所以이다. 綽楔<sup>29)</sup>의 恩典을 입

兒, 奮臂踴躍, 同心約誓, 先唱義聲齊, 赴國難之意, 今月念八日, 聚會于州城西門外, 面質心誓, 呈營門出陸, 同爲舍生取義之地, 辛甚.

壬申 三月初十日 通德郎 具濟國 幼學 梁渭慶  
姜尚勛 高漢日 朴弼基 宋益河

- 25) 이는 「楫未成誓」를 번역한 것이다. 즉 배의 노를 치면서 맹서한다는 뜻으로, 중국의 晉나라 祖逖의 故事에 의해 天下를 平定할 뜻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晉書」祖逖傳에 「渡江中流擊楫而誓曰, 祖逖不能誓濟中原, 而復濟者有如大江」이라 하였다.
- 26) 烟戶雜役의 준말.
- 27) 本文에 소개된 完文을 가리킨다.
- 28) 「孝烈錄」의 내용은 未詳이나 光武 10년(1906) 8월에 皇城宮洞新刊의 「續修三綱錄」全羅南道 大靜郡 純祖朝 義(士)條에는 「具濟國; 綾州人, 知氣儁儒好古樂善, 當純祖壬申希齊徒起兵犯順, 義氣衝發與梁渭慶, 發檄三郡召募勤王, 聞平敵之報旋凱, 登虜州牧復戶」라 하였고, 1981년에 冠文社에서 간행한 「大韓忠義孝烈錄」(下)의 忠義篇(p. 365)에도 실려 있다. 그리고 1977년 12월에는 南濟州郡에서 그 뜻을 기리기 위해 墓所 앞에 「具濟國義士碑」라 하여 鐵板(60.5×30.5cm)으로 案内板을 세웠었는데 風雨로 磨滅됨에 따라 1985년 4월에 石材(121×54.5cm)로 改建하였다. 墓所는 大靜邑 上幕境 시구왓(總口田)에 있다(乙坐).
- 29) 題音에는 綽楔로 되어 있다. 그러나 丁若鏞의 「牧民心書」禮典六條 教民條의 註에, 「古以旌門謂之綽楔, 綽楔者廣其門楣也, 今俗誤作綽楔, 無所據也」라 하여, “옛날에는 旌門을 綽楔이라 일렀다. 작설이란 것은 그 문미를 넓히는 것

는 일은 신증함에 관계되니, 마땅히 商量할 일”이라 하여, 題音을 내리고 題音 위에 官印 대신 한 곳에 馬牌(말의 수는 未詳)에 印朱를 문혀 적고 있다.

(B) 大靜儒生李漢復等謹齋沐再拜上書于

繡衣閣下, 伏以, 夫忠孝人性之秉彝, 則本島雖在絕海之外, 秉彝之性卽一也, 以是之故, 爲親之孝爲國之忠, 間多有之, 或有登啓旌門者, 或有營縣褒揚者, 而至若去秋之亂, 出於無前之變怪, 島民之惶悚愧忸, 已無可言, 而際此民擾之時, 泯滅前人之跡, 則必無後人之蔑放, 故敢將蕪辭仰浼清覽焉, 第本邑故通德郎具濟國卽鎮海縣監揚武功臣普萬之子也, 去壬申西亂與其子念祖及鄉族梁渭慶, 募得健壯勇力者數十人, 發檄三邑, 期於赴難擊楫爲誓, 適聞平亂之奇, 不得渡海而止, 雖無成功之可據, 實爲激忠之嘉尚, 自營自縣, 洞其實跡, 既有褒美復家, 記於孝烈錄, 布於三邑, 則褒揚之典, 雖爲已行, 而若無優等之褒善, 則只爲島內之陳跡, 伏願, 此等孝烈忠義之人, 這這探求, 從實褒啓, 以爲後人矜式之地, 千萬伏祝, 無任祈懇(懇의 錯誤)之至.

兼察理御史道 處分

癸亥三月 日

兼察理使(押) (題音)人有如此, 孰不嘉歎, 但啓聞體重事, 二十八日. (40.5 × 65cm)

위는 癸亥年, 즉 哲宗 14년(1863) 3월에 大靜 儒生 李漢復 등이 察理御史道(당시 察理使는 李建弼)에게 올린 上書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릇 忠孝는 人性的 秉彝이니, 本島는 비록 바다 밖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秉彝의 성품은 한 가지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아버이를 위하는 효도와 나라를 위하는 충성이 간간히 일어나고 있으니, 혹은 임금에게 아뢰어 旌門하는 자가 있고 혹은 營縣에서 포양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去秋의 變<sup>30</sup>과 같음에 이르러는 전에 없던 變怪에서 나왔으니, 島民의 황송함과 부끄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 民擾가 일어났을 때의 前人의 자취가 없어지면 반드시 後人의 蔑放이 없을 것이므로, 감히 두서없는 말로 仰訴하여 淸覽하옵니다. 다만 本邑의 故 通德郎 具濟國은 곧 鎮海縣監 揚武

이다. 지금 풍속에 棹楔이라 잘못 쓰고 있는데 근거할 바가 없는 것이다”라 하였다. 그 규모와 목적에 대해서는 『五代史』李自倫傳에, 「其量之宜, 高於外門, 門安棹楔, 左右建臺, 高一丈一尺, 廣狹方正稱焉, 巧以白而赤其四角, 使不孝下義者見之, 可以悛心而易行焉」이라 하였다.

30) 洪景來의 亂을 말하는 듯 하다.

沙溪里 綾城具氏家와 그 文書

功臣 普萬의 아드님으로, 지난 壬申年 西亂 때에 그 아들 念祖 및 鄒族 梁 渭慶과 건장하고 용력이 있는 자 수십 인을 모우고 檄文을 3邑에 발송하여 기어히 國難에 나아가 난을 평정하기로 맹세하였으나<sup>31)</sup> 마침 난이 평정되었다는 기별을 듣고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그쳐서 비록 성공의 근거가 될 수 없었지만 실로 격한 충성이 가상이므로 嶺과 縣에서 그 실적을 통찰하고 이미 美行을 칭찬하여 그 집의 부역을 면제하고 孝烈錄에 기록하여 3邑에 배포했으나, 褒揚의 恩典은 이미 시행되었다고 하지마는 만일 優等의 善行을 褒獎하지 않으면 단지 島内の 묵은 자취가 될 뿐입니다. 엿드려 원하옵건대, 이들 孝烈忠義之人을 낱알이 조사하여 사실대로 褒啓하고 後人이 삼가 본받도록 천만 祝願하옵기에 외람됨을 무릎쓰고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즉 본 내용도 (A)의 上書 내용과 같이 褒揚의 은전으로 끝나지 말고 綽楔의 은전을 내리도록 건의하는 내용이며, 동월 28일 이를 접수한 兼察理御使道는 ‘兼察理使’라 揮筆하고 “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가 가상이 여겨 경탄하지 않겠는가. 다만 事體의 重함을 啓聞할 일”이라고 題音을 내리고 題音 위의 한 곳에 官印을 捺印하고 있다(官印<朱印 7×7cm> 1곳 捺印).

4) 情由

情由도 所志類에 속한다. 여기서는 山訟關係이다.

(A) 大靜沙溪里具倫曾

右謹言情由事段, 矣身即揚武功臣嶺海縣監之曾孫也, 入島三世子孫不過十餘名, 而縣監配墓與孫婦墓竝在本里境同員矣, 本里李宗秀, 恃其多族富豪之勢, 爲其子執山於脈上切迫之地, 故矣身限死爭禁之中, 同宗秀暗請留嶺別監, 以圖形爲名, 方張尺量爲跡, 帳幕中暗葬計料是如可, 現露於尺量未畢之前, 則別監面責宗秀曰, 此何人事之道乎, 將以蔑法之意, 報官正法, 而爲其邑吏之所任, 終乃不報, 此豈非李哥有拂有力之所致乎, 右宗秀確言誰辱曰, 汝之殘族, 豈能曠日守之, 期欲葬之, 云云, 此乃輕蔑殘族而然也, 世皆若李宗秀之恃強凌弱, 則如矣等殘弱者, 果難保先軀, 故敢茲仰訴, 伏乞 洞燭敎是後, 右項李宗秀, 照以恃強凌弱之罪, 特下嚴題禁斷, 停喪即令運去, 俾解幽明之冤爲只爲,

31) 擊楫을 풀이한 내용이다. 註23 參照.

行下向敎是事.

兼使道 處分

辛丑八月 日

行使(官印) (題音) 嚴禁次, 方有傳令向事, 二十九日. (43×66.5cm)

위 情由는 辛丑年, 즉 光武 5년(1901) 8월에 大靜 沙溪里에 사는 具倫曾이 兼使道에게 올린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몸은 揚武功臣 鎭海縣監의 曾孫으로, 入島 3세에 자손은 10여 명에 불과하옵니다. 그런데 縣監의 配墓와 孫婦墓가 모두 本里地境<sup>32)</sup>에 있는데, 本里 李宗秀가 그 친족이 많고 富豪인 형세를 믿고서 그의 자손들을 위해 脈上의 切迫한 곳에 묘를 쓰려고 하므로, 이 몸이 한사코 다투어 금지하는 중에 同 宗秀가 몰래 留鎭別監에게 청하여 산소의 圓形을 이음하고 方張히 尺量하며 帳幕 안에서 몰래 장사지내려고 하다가 척량을 마치기 전에 탄로나니, 別監이 宗秀를 面責하여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 人事의 도리이냐’ 하였는데, 장차 법을 업신 여긴 뜻으로 官에 보고하여 법으로 바로잡아야 하나 그 邑吏된 所任이 끝내 보고하지 않았으니, 이 어찌 李哥의 有拂有力한 所致가 아니겠습니까. 위 宗秀는 틀림 없는 말로 아무개를 욱하면서 말하기를, ‘나의 殘族이 어찌 여러 날을 지킬 수 있겠느냐, 기어코 장사를 지내하고자 한다’ 하였습니다. 이는 殘族을 輕蔑하여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모두 李宗秀와 같이 힘을 믿고 약한 자를 괴롭히면 저희들과 같이 殘弱한 자는 참으로 先靈을 보전하기가 어려우므로, 감히 이에 仰訴하옵니다. 앞드려 아뢰옵건대, 통촉하신 후 위의 李宗秀를 힘을 믿고 약한자를 괴롭힌 罪로 다스리고 특별히 엄중한 指命을 내려 禁斷하되 葬禮를 정지시키고 즉시 運去케 하여 幽明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명령하옵실 일”

그리고 이를 접수한 使道는 ‘行使’라 揮筆하여 官印(7×7cm)을 찍고 동월(8월) 29일 자로 다음과 같이 題音을 내리고 있다. 즉 “엄금할 것으로 곧 傳令<sup>33)</sup>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리하여 같은 해 9월 1일에는 沙溪洞中으로 다음과 같은 傳令이 내려지고 있다.

(B) 傳令沙溪洞中

32) 沙溪里 마라못 부근에 있다.

33) 傳令은 官에서 管轄下의 官員이나 面任, 백성들에게 내리는 명령서이다.



沙溪里 綾城具氏家와 그 文書

卽見本里具倫曾所訴，則矣先墓在於本里境同員矣，本里李宗秀恃其多族，爲其子執山於脈上至近之處，故矣身限死禁斷之中，右宗秀依其奸計，率其多族儕，喪於切迫之地，暗請留鎮別監，以圖形爲名，使之暗欲入葬是如爲有置，李宗秀之恃勢入葬，已是法外分叱除良，所謂別監者，稱托圖形，從中成奸，俱係無嚴，卽嚴捉致嚴懲是矣，姑恕令飭到，卽自洞中嚴飭禁斷是矣，若如前更犯之弊，入於聽聞，則該犯除良，洞任段置亦難免違令之罪，十分恪遵，無至抵罪徵驗者。

辛丑九月一日 (濟州牧印 <7×7cm> 5곳 捺印)  
兼使(押) (64.5×27cm)

위 내용은 "방금 본리 具倫曾이 상소한 것을 보았더니, '저의 선묘가 본리 地境에 있는데, 본리 李宗秀가 그 친족이 많음을 믿고 그 자손들을 위해 맥상의 지극히 가까운 곳에 산을 쓰려고 하므로, 이 몸이 한사코 금단하는 중에 위 宗秀가 그 간계에 의하여 그 많은 친족들을 거느리고 절박한 곳에 장사지내려고 몰래 留鎮別監에게 청하여 산소의 도형을 이름하며 몰래 장사지내려 한다'고 하였다. 李宗秀가 勢를 믿고 장사지내려는 것은 이미 법도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른바 別監이란 자가 도형을 청탁하고 좃아서 농간을 부리는 것은 모두가 無嚴하니 즉시 엄중히 捉致하여 엄히 징계하되, 잠시 용서하고 令飭이 도착하는 즉시 洞中에서 嚴飭하여 금단하되 만약 전과 같이 다시 범하는 폐단이 聽聞에 들어오면 當該犯 뿐만 아니라 洞任도 역시 법령을 위반한 죄를 면하기 어려우니, 십분 삼가서 준행하되 법에 저촉되어 徵驗함에 이르지 않게 할 것"이라는 것이고, '兼使'라 揮筆하여 押(手決)하고 있다.

즉 위 내용이 전반부는 具倫曾의 情由 내용을 요약하여 인용하였고, 후반부는 그에 대한 대책으로 세 가지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첫째는 李宗秀가 勢를 믿고 장사를 지내려는 것은 법도에 어긋난다는 것이고, 둘째는 別監이란 자도 산소의 도형을 청탁하며 농간을 부린 것은 無嚴하니, 모두 잡아다가 令飭이 도착하는 대로 洞中에서 엄히 戒飭하여 금단할 것이며, 셋째는 만일 앞으로 다시 犯法하는 폐단이 있으면 當該者 뿐만 아니라 洞任까지도 罪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C) 證明書(20×19cm)

右證은 本人이 毛洞場貴宅先墓葉臨十二把近處에 入葬한 바 勅旨와 禁養地

耽羅文化 14號

가 分明히 有호 故로 今月晦間 自退호 意로 玆에 證據합  
明治四十四年陰十月五日 證據主 高山里  
文 成 周(手決)  
尹 三 萬(手決)  
具宅門中前

위 證明書는 1911년 10월 5일에 證據主 文成周·尹三萬이 具宅門中에 작성  
해 준 것으로, 내용은 “證據主 兩人이 毛洞場<sup>34)</sup>에 있는 貴宅의 先墓葉臨<sup>35)</sup> 12  
밭 근처에 偷葬한 바 勅旨와 禁養地가 분명히 있으므로 이 달 그믐께 甞에 移  
葬할 것으로 이 證書를 작성한다”는 것이다.

(D) 證書(30×22.5cm 野紙)

右證을 本境 毛洞中場 汜水員에 在호 坐田은 元以大同門中所有닌 바 偶於今  
者本里文百年植松場에 誤聽怪說호야 貴族에 無問植松이더니 事已發覺에 難  
免重責 故로 懇乞門中前호야 僅得解理닌 바 自今以後로 若松林蕃盛호 時라  
도 貴族과 一同分公호기 玆에 成證捺印호.

昭和貳年三月九日

證 主 具 雲 起(印章)

門中

宗 孫 滋 憲(印章)

立會員 雲 房(印章)

雲 斗(印章)

雲 會(印章)

雲 化(印章)

追은 松枚價壹圓金을 門中이 擔當出給함

又는 子孫中無異議함

위 證書는 1927년 3월 9일에 證主 具雲起가 門中에 작성해 준 것으로, 내용  
은 “毛洞場의 汜水員에 있는 坐田은 원래 門中の 소유인 바 우연히 이번에 本  
里 文百年이 소나무를 심은 곳에 괴이한 이야기를 잘못 듣고 貴族에게 묻지도  
않고 소나무를 심었다가 발각되어 重責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門中 앞에 간절

34) 朝鮮朝 때 牛馬牧場이 있었던 곳. 지금의 武陵里 지경이다.

35) 葉臨은 既存 墓所의 1百步 以内라는 說이 있다.

히 요청하여 겨우 이해를 얻었는 바, 앞으로 만일 松林이 번성할 때라도 貴族과 함께 나누기로 이 證書를 작성하고 捺印한다”는 것이다. 宗孫과 立會員(4명)이 참여했고 또 추가로 松枚價 壹圓은 門中에서 담당하여 出給하는 데 子孫 중에 아무런 異議가 없다고 하였다.

## V. 田畝文記

土地文記는 토지의 賣買·相換·還退 등의 문서로 매매문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토지의 매매는 朝鮮 前期에 있어서는 賣買契約을 締結한 후 百日 이내에 官에 告하여 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壬亂 이후부터는 立案 없이 本文記의 引渡로서 매매가 성립되었다. 토지문기에는 年號를 사용하였고, 財主·買受人·證人·執筆 등이 참여했으며, 放賣事由, 放賣田畝의 所在·字號·四標·面積·放賣價 등이 기재되었다.

(A) 雍正拾年壬子伍月貳拾肆日梁繼欣處明文(42.5×33.5cm)

右明文事段, 矣祖父護喪所入木綿貳疋, 同人處貸用, 而報給無路乙仍于, 不得已祖上流傳耕食田, 如月郎員, 皮牟伍斗付田, 四標段, 東賣者田, 西水洞, 南林時星田, 北小路分明田庫, 本文記并以, 同人處永永放賣爲去乎, 後子孫族屬中, 爭望者是去等, 持文告官卜正事.

田 主 金 繼 岡(手決)

執筆 書員 林 昌 興(手決)

위 明文은 雍正 10년 壬子, 즉 英祖 8년(1732) 5월 24일에 田主 金繼岡이 梁繼欣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그 내용은 “나의 祖父護喪 때에 소용된 木綿 두 필을 동인(金繼欣)에게 貸用하였으나 갚을 길이 없으므로, 부득이 祖上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갈아먹던 如月郎員 겉보리(皮牟) 다섯 말부치기, 4標는 동쪽이 賣者田, 서쪽이 水洞(물통), 남쪽이 林時星의 밭, 북쪽이 小路로 분명한 밭곳을 本文記 아울러 同人에게 영원히 放賣하므로 후에 子孫族屬 중에 다루어 원망하는 자가 있거든 이 文記를 가지고 官에 告하여 바로잡을 일”이라고 하였다. 執筆은 書員 林昌興이 맡고 있다. 土地賣渡의 사유는 조부 호상때에 빌려 쓴 木綿(무명) 두 필을 갚을 길이 없자 그 대신 겉보리 다섯 말지기로 放

賣形式을 통해 갖고 있는 것이다. 내용 중 4標는 사망경계의 標識, 이틀데면 동쪽의 경계는 山, 서쪽은 某某의 田地, 남쪽은 무엇, 북쪽은 무엇무엇과 같이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本文記는 그 전 매매 때에 작성된 文記(舊文記)를 말하는데, 이는 다시 매매가 이루어질 때 작성되는 新文記와 함께 양도 되거나 사정상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執筆은 文記의 집필자이고 手決은 署名(오늘날의 싸인)과 같은 것으로 良人(평민)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한다. 雍正은 중국 淸나라 世宗(1723-1735)의 年號이다.

(B) 乾隆拾陸年辛未五月拾捌日朴世綱處明文(44. 5×33. 5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右人處壯雌牛壹首貸出用下後, 價本段, 他無變通乙仍于, 矣妻邊流來耕食田, 萬達伊員, 粟壹斗陸升付只, 四標段, 東陳, 西吳善田, 南都里池, 北李榮兌田, 四標分明田庫, 右人處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 他田併付故, 不得許給爲去乎, 若有日後子孫族屬中, 相爭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卜正事.

田 主 朴 萬 巾(左手寸)

證人 妻男 姜 禮 碩(手 決)

筆 執 金 鳳 翼(手 決)

위 明文은 乾隆 16년 辛未, 즉 英祖 27년(1751) 5월 18일에, 田主 朴萬巾이 朴世岡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그 내용은 “要用所致로 右人에게 건장한 암소 한 마리를 빌려 쓴 후 값을 변동할 길이 없기에, 저의 妻家에서 祖上傳來로 갈아 먹던 萬達伊員 조 한 말 여섯되지기, 사망의 경계는 동쪽이 묶은 밭(陳), 서쪽이 吳善의 밭, 남쪽이 도리못(都里池), 북쪽이 李榮兌의 밭으로 사표가 분명한 곳을 右人에게 영원히 放賣하되, 本文記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하니, 만약에 日後에 子孫族屬 중에 서로 싸우는 폐단이 있거든, 이 文記를 가지고 官에 告하여 바로잡을 일”이라고 하였다. 證人으로는 妻男 姜禮碩이 입회했으며, 筆執은 金鳳翼이 맡고 있다. 방매의 사유로 ‘要用所致’라 한 것은 그 사유가 가장 애매했을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이다. 원래는 官에서 허가 없이 사사로히 토지가 매입될 때에도 그대로 쓰이고 있는 용어이다. 따라서 내용 중에 건장한 암소 한 마리를 빌려 썼다고 했으나 그 구체적인 용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그 값을 변동하지 못해 妻家에서

沙溪里 綾城具氏家와 그 文書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갈아 먹던 만달이왓 조 한 말 여섯 되지기를 放賣形式으로 건내주고 있는 것이다. 本文記의 경우는 '他田併付' 즉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넘겨주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左手寸은 신분이 賤民(奴婢)인 경우에 사용하는 署名이며, 가운데 손가락의 길이와 그 마디를 표시한다. 乾隆은 淸나라 高宗(1736-1795)의 연호이다.

(C) 乾隆三拾伍年庚寅貳月拾陸日趙東璧處明文(39×31cm)

右明文事段, 同人處, 當此荒年資生無路, 騎馬壹匹, 壯雌牛壹首, 牟米貳拾斗, 準計捧上後, 價本段, 祖上傳來田是在, 古介田員, 粟種貳斗付只田, 四標段, 東林逢至田, 西婢石上, 北吳時芥, 南金奉貴田, 標內田庫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 他田併付, 不得許給爲去乎, 日後若有子孫族類中, 爭望之弊是去等, 持此明文告官卞正爲乎事.

田主 自筆執 元 德 成(手決)

위 明文은 乾隆 35년 庚寅, 즉 英祖 46년(1770) 2월 26일에, 田主 元德成이 趙東璧에게 작성해 준것으로 田主 自筆로 文記가 작성되고 있다. 放賣의 사유는 凶年을 당해서 살아나갈 길이 없자 同人에게 騎馬 한 필, 건장한 암소 한 마리, 보리쌀(牟米) 스무 말을 받고 그 값으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고개왓(古介田員) 조씨(粟種) 두 말지기를 팔고 있다. 本文記는 '他田併付'라 하였다.

(D) 乾隆參拾陸年辛卯正月十八日鄭富贊處明文(56×32cm)

右明文事段, 連值荒年, 生涯末由分叱不喻, 同人前正木壹疋, 既已貸下出陸□□納上後, 價本段, 他無報給之物乙仍于, 勢不得已, 矣外邊祖上田在於刷堂北邊員, 粟種八升付只田庫, 四標段, 東小路, 西金仁□, 南金仁乞, 北買者田, 四標分明爲遺, 價本則貳粟半價以, 粟壹石貳斗加捧後, 同富贊亦中,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本是祖上田庫, 不得許給爲去乎, 日後若有同生子孫中, 雜談之端則持此文記以, 告官卞正事.

田 主 丁 老 方(手 決)

證 人 奴 次 發(左手寸)

筆 執 營 吏 李 宗 顯(左喪不着)

위 明文은 乾隆 36년 辛卯, 즉 英祖 47년(1771) 정월 18일에, 田主 丁老方이 鄭富贊에게 작성해 준 것이다. 證人으로는 奴子(중) 次發이 立會하였고, 筆執

은 營吏 李宗顯이 맡고 있다. ‘在喪不着’은 ‘喪不着’이라고도 쓰며, 喪人인 경우에 署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것이 관례가 되어 있었다. 방매의 사유는 연속되는 흉년을 당하여 살아나갈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同人에게 이미 正木 한 필을 빌리고 出陸하여 □□을 納上한 뒤에 그 값으로 달리 값을 물건이 없자 刷堂北邊에 있는 外家の 祖上田 조씨 여덟 되부치기를 正木 두 필 반 값으로 조 한 섬 두 되를 받고 매도하고 있다. 중전에 빌린 한 필에 다시 한 필 반 값을 더 받고 있는 것이다.

(E) 乾隆三十七年壬辰柒月初一日洪仁範處明文 (37.5×32cm)

右明文事段, 同人處去辛卯七月分, 壯雄牛壹首, 壯雌牛一首合二首, 折價四正木後, 貸出以爲急用之後, 價本段, 矣妻邊衿下田庫, 漢木員, 皮牟種拾貳斗付, 四標段, 東北小路, 西婢才今田, 南奴□□田, 標分明田庫, 同人處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併付不得許給爲在果, 或有日後子孫族類中, 怨望相詰之弊是去等, 此文記告官卞正事.

田 主 金 秀 兌 (手 決)

訂 人 金 命 (左手寸)

訂 保 文 武 學 (手 決)

筆 執 里 任 池 庶 潤 (手 決)

위 明文은 乾隆 37년 壬辰, 즉 英祖 48년(1722) 7월 1일에, 田主 金秀兌가 洪仁範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그 내용은 “同人에게 지난 辛卯年(영조 47년, 1771)에 건장한 숫소 한마리와 건장한 암소 한 마리, 합계 두 마리를 四正木으로 값을 정하고 빌려서 긴급히 사용한 후, 값은 나의 妻家에서 처묵으로 받은 漢木員(한뭇) 걸보리씨 열두 말부치기, 4표는 동북쪽이 小路, 서쪽이 婢子 才숙의 밭, 남쪽이 奴子 □□의 밭으로 사표가 분명한 곳을 同人에게 영원히 방매하되, 本文記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하거니와 혹 일 후에 자손족류 중에 원망하여 서로 다투는 폐가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官에 告하여 바로잡을 일”이라고 하였다. 訂人과 訂保(둘 다 證人을 뜻한다)로 金命과 文武學이 입회하였고, 筆執은 里任 池庶潤이 맡았다. 방매의 사유를 ‘急用’이라 한 것은 그 용도가 막연한 경우이다. 서남쪽의 밭이 각각 奴婢의 밭으로 기재되고 있는데, 이들은 中央 官署에 소속된 官奴婢였을 것이다. 本文

記는 '他田併付'라 하였다.

(F) 嘉慶三年戊午九月初九日具濟國處明文(41×33.5cm)

右明文事段, 正木捌疋貸用於同人後, 價本段, 出處無路乙仍于, 古介田員, 粟種貳斗付只, 永永放賣, 四標段, 東名不知許人, 西姜必昌田, 南北金尚彬田, 四標分明田庫, 永爲準計, 本文記并以永永放賣, 日後或有爭卞之弊, 持此文卞正事.

田主 自筆執 趙完璠(手決)

위 明文은 嘉慶 3년 戊午, 즉 正祖 22년(1798) 9월 9일에 田主 趙完璠이 具濟國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田主 自筆로 文記가 작성되고 있다. 賣渡人이 買受人에게 正木 여덟 필을 빌린 것이 放賣의 사유가 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留意되는 것은 '古介全員, 粟種貳斗付只' 즉 "고개왓 조씨 두 말부치기"란 내용이다. 앞서 본 (C)의 文記에서 地境과 面積이 이와 똑 같은 내용이 賣買되고 있는데, (C)의 文기에서는 田主 元德成과 趙東璧사이에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여기서는 田主 趙完璠과 具濟國 사이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趙完璠과 趙東璧은 父子之間이므로 (C)의 文기와 본 文기는 동일지역임을 알 수 있다. 결국 (C)의 文기가 관련이 없는 具氏宅에 소장되고 있는 것은 그 내용에 '本文記并以'란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토지가 매매될 때 本文記(舊文記)도 함께 양도되었기 때문이다. 앞서의 文기들에서 보면, (A), (B), (D), (E)의 文기도 이와 같은 경우로 具氏宅에 양도되어 보관하게 된 것이라 생각되나 (C)와 같이 증거가 되는 文기가 본 總括文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嘉慶은 淸나라 仁宗(1796-1820)의 年號이다.

(G) 嘉慶伍年庚申十二月初拾日具濟國處明文(40.5×31.5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同人處正木肆疋準計捧上後, 新界前員, 買得參片, 畚種參升付只, 報給成文爲乎矣, 東林時春畚, 南姜敏恒畚, 西官畚, 北林德運田, 四標分明參片畚庫乙,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他畚併付故不得許給爲去乎, 日後子孫族屬中, 相爭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卞正事.

畚主 金雄泰(手決)

筆執 書員 林胤彩(手決)

위 명문은 嘉慶 5년 庚申, 즉 正祖 24년(1800) 12월 10일에 畚主 金雄泰가

具濟國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여기서도 放賣의 사유를 要用所致라 하고 있다. 正木 네 필을 계산하여 받고 買得한 新界前員에 있는 법씨 세 되부치기 논 세 판이(片)를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本文記는 다른 田畝이 함께 記載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보면, 논 면적이 片(판)으로 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筆者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주도 동남부 지역의 田畝文記들에서는 논 면적이 陸地部에서와 같이 ‘배미’(夜味)로 표기한 경우도 있었다.

(H) 嘉慶貳拾伍年庚辰十月二四日具念祖處明文(31×31.5cm)

右明文事段, 矣所穴員, 牟種伍斗付, 東田主金元泰, 南池昂仁, 西李求技, 北大路, 四標分明田庫以, 同人之禾三雄牛, 本文記永永換賣, 如是成文後, 子孫族屬中, 若有雜談則持此下正事.

畝主 金亨泰(手決)

證筆 姜孝曾(手決)

위 明文은 嘉慶 25년 庚辰, 즉 純祖 20년(1820) 10월 24일에 田主 金亨泰가 具念祖에게 작성해 준 문기이다. 姜孝曾在 證筆(證人과 筆執)을 맡고 있다. 그런데 본 明文은 “換賣”라 되어 있듯이 田主의 矣所穴員 보리씨(牟種) 다섯 되부치기 받고 買受人의 세살배기 숫소를 交換하고 있는 내용이다.

(I) 道光貳年(壬午)正月貳拾陸日具濟國處明文(35.5×34cm)

右明文事段, 矣要用所致, 前年分, 正木肆拾伍疋貸用後, 報給無路故, 價本段, 祖上衿給, 漢池員, 牟種貳拾斗付, 東標主李奉春田, 南標主姜孝彦畝, 西標主金重衡田, 北標(主)柳口侃田, 右項標內田庫, 永爲放賣爲乎矣, 本文記段都許併付故, 不得許給爲去乎, 日後子孫族屬中, 雜談之弊是去等, 執此文記告律下正事.

田主 林德云(手決)

筆執 姜孝閱(手決)

위 明文은 道光 2년, 즉 純祖 22년(1822) 정월 26일에 田主 林德云이 具濟國에게 작성해 준 문기이다. 여기서도 放賣의 사유는 要用所致라 하였으나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해에 正木 45필을 貸用한 후 그 값을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이 방매의 사유가 되겠다. 그리고 本文記는 都許文에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



沙溪里 綾城具氏家와 그 文書

문에 넘겨주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都許文은 都許文記 즉 형제자매 모두에게 재산을 分給하는 문기이다. 道光은 淸나라 宣宗(1821-1850)의 年號이다.

(J) 道光十二年壬辰四月初三日具念祖處明文(40×40.5cm)

右明文事段, 右人處, 正木肆疋取用. (탈락)叔母主別給是在田庫於弄木池員, 牟種(탈락)而四標段, 東李之永田, 西禹明□田, 北小路, 南□保吉田, 標分明田庫乙, 本文記并以, 許與報給永爲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中, 若有雜談之弊是去等, 以此文記卜事.

田 主 李景森(手決)

筆執 田主從兄 李景遜(手決)

위 明文은 道光 12년 壬辰, 즉 純祖 32년(1832) 4월 3일에 田主 李景森이 具念祖에게 작성해 준 문기이다. 筆執은 田主의 從兄 李景遜이 맡고 있다. 文記의 아랫부분이 탈락되었으나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 방매의 사유는 右人 즉 具念祖에게 正木 네 필을 취하여 사용한 것이고, 그 때문에 叔母主께서 別給한 弄木池員에 있는 밭(牟種)을 本文記와 아울러 방매형식을 통하여 갚아주는 내용이다. 내용 중 別給이라 한 것은 집안에 경사나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 재산을 증여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이며, 다음의 別給文記를 참조할 것.

(K) 乾隆陸拾年乙卯拾壹月初十日李景森處別給文(31×25cm)

右文爲別給事段, 右人都許文筆執, 勢不得已, 粟田壹庫在於龍木池北邊員, 粟種陸升付, 四標段, 東李昌彥田, 西禹申田, 南鄭昌成田, 北小路, 四標分明爲在, 此田庫乙, 同人亦中, 永永別給爲去乎, 若有日後雜談之弊是去等, 此別給記以憑考事.

田主 李景柱(手決)

筆執 朴泰隆(手決)

위 別給文은 乾隆 60년 乙卯, 즉 正祖 19년(1795) 11월 10일에 田主 李景柱가 李景森에게 작성해 준 문기로 別給의 사유는 右人, 즉 李景森이 都許文의 筆執을 담당했기 때문이라 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L) 道光貳年(壬午)拾月貳拾陸日具念祖處相換記(42.5×20.5cm)

耽羅文化 14號

右相換文事段，妻家衿得田在於今勿路送水員，粟種陸刀付田庫，四標段，東梁希孔田，南姜永武田，西姜繼祖田，北林德采田，四標分明田庫以，同人田，犯川眞木圓員，永爲相換是矣，本文記段，他田併付故不得許給，如是成文之後，若有雜談則持此憑考事。

田主 高台楨(手決)

筆執 李連暹(手決)

위 相換文은 道光 2년, 즉 純祖 22년(1822) 10월 16일에 田主 高台楨이 具念祖에게 작성해 준 문기로, 田主 高台楨이 今勿路 送水員에 있는 妻家에서 妻 몫으로 받은 조씨(粟種) 여섯 되(刀는 升과 같다)부치기 밭을 具念祖의 犯川 眞木圓에 있는 밭과 서로 교환하고 있다. 거리가 멀어 경작에 불편하기 때문에 각기 살고있는 인접지역의 밭으로 바꾼 것이 아닌가 한다.

(M) 建陽二年丁酉五月二十日具雲赫處不忘記(38.5×31cm)

右不忘記事段，本里里稱都買片，右人處錢文陸兩準捧，右山坐田，牟種陸斗付只，標東林甲曾田，西金貞行田，南姜呂森田，北水洞，各標分明而田庫，永爲放賣是矣，三人中，後若有更言，則此不忘記憑考施行事。

金 貞(手決)

都買主 李用淑(手決)

林成口(手決)

이 不忘記는 建陽 2년(1897) 5월 20일에 具氏門中에서 작성한 다짐의 성격을 띤 文書(可考文)이다. 그 내용은 “本里에서 都買片이라고 하는 山坐田 牟種 여섯 말부치기를 錢文 여섯 냥을 받고 영원히 放賣한다는 것이고, 뒤에 3인 중에 다시 말이 있을 때에는 이 不忘記를 가지고 憑考하여 시행하라”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文記가 참고된다. 建陽 2년은 光武 元年의 錯誤이다.

(N) 建陽二年丁酉八月望日具氏門中可考文(41.5×28cm)

□□□吾矣等祖母任‘墓在毛洞場汨水東乙坐辛向原矣，其末子墓在穴前，且長婦洪氏墓在青龍下，則四邊皆是吾地，而田則武陵里桶也，其桶內辨賣時，末子孫雲赫，稱以門中，買受表於辨賣主三人處，而懇乞於族叔曰，此山坐田松多蕃林，不可不買也，表雖六兩文，實則四兩也(門中則六兩，故右人獨賣於右人三人處，納於門中故也)，受斂於諸孫，永爲守護可也，云答云無妨，則四兩文

沙溪里 綾城具氏家와 그 文書

受斂於三派者十三名, 準授雲赫, 以其田爲山坐田, 以其松爲百年松是齊.

此亦中, 末子位穴前, 但植六條松一字行, 此六條松斬刈後, 末子子孫與長仲派子孫, 一體平均分配爲齊, 若日後雜言, 則以此文相考事.

門長具侍曾	宗孫	雲平	才亨
倫曾		雲用	
僖曾		雲白	
飲曾	買田主	雲赫(手決)	
		雲房	
		雲斗	
		雲益	
		雲會	
		雲圭	

이 문기는 建陽 2년(1897) 8월 보름에 買田主 雲赫이 具氏門中에 작성해 준 것으로 다짐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 내용은 "우리들의 祖母 任氏墓가 毛洞場 汨水(골물) 동쪽(乙坐辛向)에 있는데, 그 末子墓는 穴前에 있고 또 長婦 洪氏 墓는 靑龍下에 있는 즉 사방이 모두 우리 땅이며 밭은 武陵里 桶이다. 그 桶內를 辨賣할 때에 末子孫 雲赫이 門中에서 辨賣主 三人에게 매수한 表라고 칭하며 族叔들에게 간절히 요청하기를, '이 山坐田은 소나무가 많고 숲이 무성하니 사지 않을 수 없습니다. 表에서 6냥이라 했지만 실은 4냥입니다. <門中인 경우에 6냥이므로 위 雲赫이 혼자 위 세 사람에게 사서 문중에 바쳤기 때문이다> 諸孫에게 거두고 영원히 수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니, 모두가 '무방하다'고 대답하였다. 4냥을 3派의 冠者 13명에게 거두어 雲赫에게 계산해 주되, 그 밭을 山坐田으로 삼고 그 곳에 있는 소나무를 百年松으로 삼아야 할 것임. 이리하여 末子位穴 앞에 있는 6條松을 1字行으로 심고 대신 6條松을 베어낸 후 末子子孫과 長仲派 자손이 모두 평균하여 분배할 것이며, 만일 일후에 雜言이 있으면 이 文記로 相考할 것"이라 하였다.

(O) 壬寅十一月初五日廣濟里李先達處典當文(34.5×25cm)

右典當文段, 急有用處故, 右人處錢文四十兩代用, 價報段, 毛洞場武陵里通山坐田, 牢種六斗付只, 穀石半作意自此典當是矣, 日後換追意, 如是成表事.

典當主 具汝寬(手決)

이 典當文은 壬寅年 11월 5일에 典當主 具汝寬이 廣淸里 李先達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내용은 “긴급히 사용할 곳이 있어서 李先達에게 錢文 40냥을 빌려 쓰고 그 값으로 毛洞場 武陵里 물통 옆의 山坐田 牟種 여섯 말부처기의 穀石을 半作하기로 하여 典當하되, 일후에 換追할 뜻으로 이와 같이 證表를 작성한다”는 것이다.<sup>36)</sup>

(P) (分財記) (37.5×31.5cm)

(탈락)

一多池員牟種家基田參斗付南長子田

次子儋曾衿下 三間草家一鞭

一泉水員牟種拾壹斗付東姜順命田

一上北只員牟種貳拾斗付內南邊拾斗付南大路

一果園後員粟種壹斗付內西邊伍升付西尹哥田

一前番員租種捌升付內北邊肆升付北林宗善畝

一多池員牟種貳斗伍升付南長子田

一柴木田員貳合粟種肆升付南己上田

一沙溪里內員家基牟種貳斗付西李鳳暉田

次子儋曾衿下

一上北只員牟種貳拾斗付內北邊拾北姜順命田

一果園後員粟種壹斗付內東邊伍升付東小路

一上勿路員貳合牟種柒斗付東張成旭田

一前番員租種捌升付內南邊肆升付南許斑田

36) 毛洞場의 山坐田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後代 門中文記들도 있다.

(A) 庚辰(1940)十二月初四日門中會件

右門中坐田在於毛洞中場內인바自今年爲始하여出稅을(물)十歲限拾參圓爲定합.

宗孫 斗京(印章) 以下 雲九, 弘三, 庚宦, 滋永.

典稅金 日休 殿.

(B) 門中書記

壬午年(1942)正月一日

武陵一區毛洞中場基地麥種六斗落只을(물)限拾年으로契約하고出稅金拾五圓은納報함에效에證書함.

壬午年正月一日

耕作人 具 日 休(印章)

從(宗의 誤)孫 具 斗 京 殿.

沙溪里 綾城具氏家와 그 文書

一多池員牟種肆斗付内北邊貳斗付北李沃圭田  
一柴木田員二合粟種肆升付北今宗玉田  
一多池員家基牟種參斗付西柳生田 三間草家一鞭  
長女單山後員粟種壹斗貳升付内西邊肆升付南大路  
次女單山後員粟種壹斗貳升付内中邊肆升付南大路  
次女單山後員粟種壹斗貳升付内東邊肆升付南大路  
次女於乙工後員粟種陸升付内南邊參升付南金衣良田  
僖曾母別給日果鹽田員鹽田一庫東小路  
行  
元財主自筆父具(手決)

이 分財記는 '元財主自筆父具'<sup>37)</sup>라 한 것으로 보아 財主 生時에 재산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連接되었던 文記의 앞 부분이 떨어져 나갔으나 앞서 보아온 家系를 통해서 본 文記의 分財 대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본 文記의 내용 중에 '長子'라는 文句가 있고 또 次子로 僖曾, 欣曾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具念祖의 4남 4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즉 4남은 僖曾(長子), 侍曾(次子), 僖曾(三子), 欣曾(四子)이다. 따라서 분재의 대상 인원은 9인(4男 4女와 僖曾母)임을 알 수 있다. 분재된 田畝는 대부분 동일지역의 전답을 분할하여 분재하고 있다. 3子(僖曾)와 4자(欣曾)에 3간 草家 한 채(鞭)가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는 네 아들에게 모두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아지며, 특히 僖曾母에게는 日果里 鹽田員에 있는 鹽田 한 곳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다. 理解의 편의상 表로 만들어 보면 다음 表(1)과 같다.

37) 元財主는 僖曾과 欣曾이 아들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具念祖로 推定된다.

〈表(1)〉

分財對象	分 財 內 容			四 標	備 考
	地 境	作 物	面 積		
長子(異曾)	탈락				
次子(待曾)	탈락 多池員家基田	牟種	3斗	南 長子田	
次子(禧曾)	泉水員 上北只員 果園後員 前番員 多池員 柴木田員(2斗)  沙溪里內員家基	牟種 牟種 粟種 租種 牟種 粟種  牟種	11斗 10斗 5升 4升 2斗5升 4升  2斗	東 姜順命田 南 大路  西 尹哥田 北 林宗善番 南 長子田, 己上田 西 李鳳暉田	
次子(飲曾)	上北只員 果園後員 上勿路員 前番員 多池員 柴木田員 多池員家基	牟種 粟種 牟種 租種 牟種 粟種 牟種	10斗 5升 7斗 4升 2斗 4升 3斗	北 姜順命田 東 小路 東 長成旭田 南 許斑田 北 李沃圭田 北 金宗玉田 西 柳生田	
長 女	單山後員	粟種	4升	南 大路	
次 女	單山後員	粟種	4升	南 大路	
次 女	於乙工後員	粟種	3升	南 金衣良田	
禧曾(母)	日果鹽田員	鹽田	1窠	東 小路	

이상에서 보아온 田畚文記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表(2)와 같다.

〈表(2)〉

年 號	放買事由	取得經緯	地 境	作物	面積	價 格	性 格	買受人	賣渡人
雍正10	護 喪	祖上流傳	如月郎員	皮牟	5斗		放賣	梁繼欣	金繼岡
乾隆16	要用所致	妻邊由來	萬達伊員	粟種	1斗		·	朴世綱	朴萬巾
35	凶 年	祖上傳來	古介田員	粟種	2斗		·	趙東璧	元德成
36	凶 年	外邊彫像	刷堂北邊	粟種	8升	二疋半價	·	鄭富贊	丁老方
37	急 用	妻邊衿下	漢池員	米牟	12斗		·	洪仁範	金秀兌
嘉慶 3	貸 用		古介田員	粟種	2斗		·	具濟國	趙完璠
5	要用所致	買 得	新界田員	畜種	3斗		·	具濟國	金雄泰
25			矣所穴員	牟種	5斗	禾三雄牛	換賣	具念祖	金亨泰
道光 2	要用所致	祖上衿給	漢池員	牟種	20斗		放賣	具濟國	林德云
12	取 用	叔母別給	弄木池員	牟種			補給	具念祖	李景森
乾隆60			龍木池北	粟種	6升		別給	李景森	李景柱
道光 2		妻家衿得	今勿送水	粟種	6刀		相換	具念祖	高台楨
建陽 2		山坐田	本里都買	牟種	6斗		放賣	具雲赫	都賣主
壬寅	急有用處	山坐田	武陵里桶	牟種	6斗		典當	李先達	具汝寬

#### IV. 맺 음 말

이상에서 沙溪里 綾城具氏 宗家에 소장되어 있는 일련의 古文書를 대충 살펴 보았다. 극히 적은 분량이지만 이들 고문서를 樣式別로 분류해 보면 國王文書, 官府文書, 戶口單子, 私人文書, 財産文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國王文書로는 教旨가 있다. 教旨는 국왕이 신하에게 官職·官爵·資格·謚號·土地·奴婢 등을 내려주는 문서로, 그 내용에 따라 告身·紅牌·白牌·追贈·贈謚·賜牌教旨 등으로 나누어지며, 本稿에 수록된 教旨 5건은 告身教旨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2) 官府文書로는 教牒과 完文이 있었다. 教牒은 5품 이하 관원의 임명시에 吏曹와 兵曹에서 왕명을 받아 臺諫의 署經을 마친 후에 수행하는 官職 임명장

이며, 完文은 官府에서 鄉校, 書院·契·個人 등에게 발급하는 문서로, 選上이나 雜役의 免除 등 權利나 特典을 인정하는 내용이 주가 되고 있다. 本稿에 수록된 教牒은 通善郎 具普萬을 通德郎으로 임명하는 내용이며, 完文은 烟戶 雜役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3) 戶口單子是 乾隆 57년(正祖 16, 1792) 壬子式으로부터 光緒 8년(高宗 19, 1882) 壬午式까지의 90년 동안의 것으로 현재 30張이 所藏되고 있다.

(4) 私人文書로는 所志類, 즉 所志·上書·情由 등이 있었다. 所志類는 민이 官에 올리는 訴狀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지류는 당사자들이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귀중하게 보관하게 된다. 本稿에 수록된 所志는 출륙할 때에 산 馬匹을 찾아달라는 請願 내용이고, 上書 2건은 모두 旌門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情由는 先祖 山局 내의 暗葬을 禁斷해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5) 財産文書로는 田畝의 賣買와 相換·典當·財産의 分給 등의 문서가 있었다. 이 중 分給은 財主가 生時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는 문서이며, 別給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지급하는 문서이다.